



도민이 중심
신뢰받는 의회

제40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3. 4. 20.(목) 10:00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충청북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 토 보 고 서

1. 발의자: 이정범 의원 등 7인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2023년 4월 11일
- 회부일자: 2023년 4월 11일

3. 제안 이유

-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발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목적 및 용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 안 제2조)
-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조례의 적용범위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제5조)
- 학교복합시설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협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학교복합시설 설치 시 고려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학교복합시설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학교복합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기관 간 협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2조)
-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5. 검토 의견

가. 조례 제정이유

- 우리나라는 현재 합계출생률이 0.78로 초저출생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며 소멸위기의 지방과 도심 공동화 현상, 학교 통폐합과 폐교가 지속됨에 따라 ‘학교와 지역사회 상생’, ‘학생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학교 및 지역 사회의 생활환경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 정부는 이 같은 사회변화 추세와 요구를 반영하여 2021년 「학교 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복합시설법”) 개정과 시행령 제정을 통하여 학교복합시설 설치·운영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지난 3월 교육부가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을 발표(참고자료 1)하며 학교시설 복합화 정책을 강화해 나가고 있음.

【참고자료 1】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 (2023. 3.17.)

주요 내용

- 229개 모든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학교복합시설이 운영되도록 설치 지원
 - 5년간(2023~2027) 매년 40개교씩 총 200개교 학교복합시설 공모·선정
 - 늘봄학교 '23년 시범운영 학교 등 우선 선정
- 늘봄학교 지원을 위한 기반(인프라) 확충으로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지원
 - 문화·예술·체육 등 프로그램 운영 가능 시설 및 아동친화시설 조성 등
- 지역·학교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학교복합시설 조성
 - 신도시, 구도심, 농어촌 등 지역 여건에 따른 특화방안 마련
- 행·재정적 지원을 통한 학교·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 사업비, 관리·운영비 지원 및 전문기관을 통한 현장 지원
 - 사업절차 간소화 및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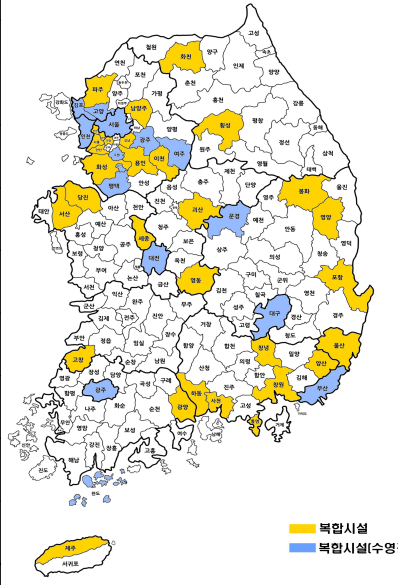
자료: 교육부 교육자치안전국 교육시설과(2023. 3. 17)

- 현재 17개 시도 기초지자체에서 총 87개의 학교복합시설이 활발하게 운영 또는 추진 중에 있음(참고자료 2)
- 충청북도는 2020년부터 송면중 생활SOC복합화 사업을 시작으로 학교복합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 성과는 아직 미미한 상태임.
- 그러나 정부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전국 229개 모든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학교복합시설이 운영되도록 매년 40개교씩 총 200개 학교를 공모·선정하여 추진한다는 계획이어서 향후 학교복합시설 정책은 더 확대될 전망이며 이에 따라 우리 충청도 학교복합시설을 요청하는 학교와 지방자치단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참고자료 2】

[기초지자체별 학교복합시설 현황]

시도	지자체 수	학교복합시설 (수영장)		시도	지자체 수	학교복합시설 (수영장)	
		보유	미보유			보유	미보유
서울	25	24 (15)	1	강원	18	2	16
부산	16	12 (3)	4	충북	11	2	9
대구	8	2 (1)	6	충남	15	2	13
인천	10	3 (1)	7	전북	14	1	13
광주	5	2	3	전남	22	2 (1)	20
대전	5	2 (1)	3	경북	23	4 (1)	19
울산	5	2	3	경남	18	6	12
세종	1	1 (1)	0	제주	2	1	1
경기	31	19 (7)	12	합계	229	87 (31)	142



자료: 교육부 교육자치안전국 교육시설과(2023. 3. 17)

○ 따라서 충청북도 내 학교와 기초지자체별 특성 및 지역 요구를 반영한 충청북도 맞춤형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 판단됨

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1조는 학교복합시설 설치와 운영 목적이 학교와 지역사회의 상생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에 있음을 명시한 것으로 조례안의 입법 취지와 필요성을 적절히 반영한 규정이라 사료됨.

- 안 제2조는 관련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학교와 학교복합시설 및 학교복합시설운영주체에 대한 뜻을 명시한 것으로, 조례의 적용 대상 학교와 설치되는 복합시설 및 운영·관리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여 체계적인 학교복합시설 설치와 효율적 운영을 중시한 규정이라 사료됨

-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와 시장·군수와의 상호협력을 통한 학교 복합시설 설치 운영 정책 수립과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통한 시행 및 학교와 지역사회 간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하여 성공적인 학교복합시설 설치 운영을 위해서는 교육청과 학교, 지자체 간 상호협력이 최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임을 강조한 것으로 사료됨.

- 안 제6조는 조례 제정 시 집행청 관련 부서와의 협의과정에서 「학교복합시설법」에서 규정한 학교복합시설에 관한 규정과 충청북도 내 지역의 특수성 및 필요를 반영하여 학교복합시설의 기능을 규정한 것으로 학교복합시설 운영과 활용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됨.

- 안 제7조에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의 교육감과의 협의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다각적 측면에서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와 체계적인 시행 체계를 강조한 것으로 사료되며,

- 안 제8조 학교복합시설 설치 시 고려 사항으로 학생과 주민 이용 시설의 출입구 및 이동 동선을 최대한 분리하고, 범죄예방환경 설계 우선 적용과 각종 안전장치를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한 것은 학생의 학습활동 보장과 학교 환경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원칙적으로 필요하며 중요한 규정이라 판단됨.

- 안 제10조에는 학교복합시설 개방에 관한 사항으로 학교교육과 학생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최대한 개방하도록 규정하여 지역주민의 학교복합시설 활용도를 높이고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였음.

- 안 제11조에서는 교육감과 도지사 간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한 협의와 관련 기관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복합시설 설치 운영에 있어서 관련 기관 상호 간의 협의와 협력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12조에 학교복합시설운영협의회의 구성·운영을 통한 학교 복합시설 프로그램 운영과 복합시설 이용 방법 및 시간, 운영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한 것은 「학교복합시설법」 제7조의 학교시설운영협의회에 관한 위임 규정(참고자료 3)에 따른 것으로 상위법규정과 조례와의 체계성에 부합하는 적절한 규정이라 사료됨.

【참고자료 3】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학교복합시설법)

제7조(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 ①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를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교육 및 안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각 학교에 설치할 수 있다.
② 운영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 종합의견

- 현재 우리 사회가 인구감소, 학령인구 감소로 인하여 학교와 지역사회가 소멸해 가는 위기에 직면해 있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이 중요한 과제로 주목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과 지역사회가 공존하는 학교시설복합화 정책 실현을 통하여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 발전하는 지역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해, 학교복합시설 설치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 제정은 그 취지와 필요성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됨.

- 또한 조례의 조문별 검토에서도 전체적으로 조문 체계와 주요 내용측면에서 「법령 입안 및 심사기준」 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을 준수하여 법령에 위배 되는 사항이 없고, 집행부 담당 부서와의 협의와 조례안 예고 등 전체적으로 조례 제정 입법 절차를 준수한 타당한 조례 제정이라 판단됨.

-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충청북도교육청은 학교와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학교복합시설 설치 운영 사업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물론, 많은 일반 학교에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적극적인 시행 노력을 통하여 학교의 지역사회 교육·사회·문화적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고 학교가 지역의 성장 동력을 견인하며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인식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